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2018. 9. 28.(금), 15:00
2. 장 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	우정원*, 이주희, 임원정, 신하윤, 정연화, 유제욱, 차안나, 문지영, 김영주, 이정화, 장남수**	김희선(간사)
불참인원	1	안홍식	

*의장 **부의장

4. 안 건

- 제1호의안: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의 일
- 제2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안의 일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는 오늘 부득이 안홍식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보고하다.
- 나.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 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오늘 회의에 상정된 제2호 안건의 상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다.

6. 안건심의

가. 심의사항

- 제1호의안: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의 일

- (1) 의장은 제1호의안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안건에 대해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기획처장은 대학의 발전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기획처 참석자: 김상택 기획처장, 김희선 기획부처장(기획), 최형석 기획부처장(평가))

- (2) 이주희 평의원은 발전계획안의 분야별 세부계획에 대해 상시 지속업무와 발전계획 추진을

- 위한 계획이 혼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발전계획은 학교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지닌 사업들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필요함을 지적하다. 이어 공약을 기초로 작성한 자료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표하다.
- (3) 임원정 평의원은 공약에 있는 의료원 관련 내용은 학교 발전계획과 관련이 없는 사안인지 문의하고, 세부추진계획 중 기금운영개정과 관련하여 목적성 자금인 기금의 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의하다.
 - (4) 장남수 평의원은 발전계획의 세부계획에 2018년 현재 상황 평가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면 연차별 계획 수립 자료가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하고, 현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의 여성고등교육을 연계한 사업 검토를 제안하다.
 - (5) 신하운 평의원은 발전계획이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법인이사회의 심의·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인지 문의하고, 세부추진계획 중 학관 리모델링이 인문대 설명회 이전으로 구성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심의중인 상황에 의문을 표하고 발전계획 수립 일정에 대해 질문하다.
 - (6) 차안나 평의원은 신하운 평의원의 학관 리모델링 관련 사안에 공감을 표하고,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후 대학의 주요사안은 학생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다.
 - (7) 의장은 차안나 평의원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세부 질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인지 묻고 차안나 평의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다. 이에 의장은 공약의 제도화 및 실현화 방안자료와 함께 질의서를 본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나, 첨부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다.
 - (8) 김영주 평의원은 발전계획 세부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동창DB 제공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설명하고, 젊은 동창들의 동창회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나 젊은 동창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총동창회 활동(예: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 (9) 문지영 평의원은 공약 자료 중 논문심사료 관련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여성생애주기에 맞는 캠퍼스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엄마원생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을 문의하다. 이에 의장은 공약 자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임을 설명하고 대학원에 대한 질문으로 참고하도록 하다.
 - (10) 기획처장은 공약을 기초로 하여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검토를 통해 실행이 어려운 공약들은 조정되었음을 설명하다. 발전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겠으나,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계획의 큰 방향성을 따르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다. 이어 기획처장은 발전계획안에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도 있으나 해당 결과를 기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학관은 재건축할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대체 공간 확보가 어려워 리모델링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중임을 설명하다.

- (11) 김영주 평의원은 중학교 이전을 통한 해당 공간 활용에 대해 문의하고 기획처장은 고려한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하다.
- (12) 이정화 평의원은 인문대학에서도 학관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학관 리모델링의 타당성에 대해 구성원 합의가 이루어져야 동창을 통한 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기획처장은 관리처에서 인문대학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하다.
- (13) 정연화 평의원은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상시 진행되는 업무일지라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밖에 없는 점, 해당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나, 진행 과정에서 각 구성단위의 의견수렴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다. 이어 북한의 여성 교육, 의료원 등을 반영한 변경된 발전계획으로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하다.
- (14) 차안나 평의원은 학관 리모델링에 대해 효율성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다.
- (15) 신하운 평의원은 공약을 발전계획에 그대로 담지 못한다는 점은 이해하나,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관련한 사항이 발전계획에 없는 점을 지적하다.
- (16) 기획처장은 발전계획에 대해 주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나, 대학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다. 교원인사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부분은 발전계획에는 담지 못하였으나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학교 발전계획안에 의과대학은 포함하지만 의료원을 넣기는 어렵다고 답하다. 이어 북한 여성 교육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 외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17) 장남수 평의원은 대학의 사명(교육, 연구, 사회봉사) 순서대로 발전계획 중점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재설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기획처장은 순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다.
- (18) 의장은 학교의 발전계획은 내부의 약속이자 외부와의 약속이므로 학교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상황에서 발전계획은 공약과의 연계성 여부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할 지에 대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19) 유제욱 평의원은 학교가 발전계획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약은 다른 방법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이에 대해 이주희 평의원은 공약과 발전계획이 일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따로 존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20) 차안나 평의원은 이주희 평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구성원 신뢰 제고를 위해 발전계획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2차 피해방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요청하다.

- (21) 문지영 평의원은 발전계획안에 대학원 관련 내용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다.
- (22) 의장은 제1호의안 심의 여부에 대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평의원들은 수정을 통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다. 이에 의장은 수정의 방향에 대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1인 1표, 비밀투표를 진행하여 발전계획과 공약과의 연계성을 참고로 기재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대학의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은 수정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자문을 종료하다.

□ 제2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안의 일

- (1) 의장은 제2호의안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안의 일은 안건을 상정한 차안나 평의원이 회의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평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평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2) 이주희 평의원은 개선 요구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고, 안건 상정을 요청한 차안나 평의원에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자료를 요청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18년 10월 4일

의 장 우 정 원

